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70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박 정 · 김태선 · 이학영  
김현정 · 안호영 · 박홍배  
안도걸 · 한민수 · 허종식  
김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고,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2112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공을”을 “제공과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관련 계획 또는 대책의 검토를”로, “있다”를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정보”를 “정보와 검토 의견”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공과”를 “제공, 제2항과”로, “실태조사에”를 “검토 의견의 요청과 제공,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등을 수립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기상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계획 또는 대책 등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의견을 관계 되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국가적 기후위기 감시·예측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표준 체계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관리·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반영 점검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정책협의회는 제5항의 협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별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이하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에 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추세 및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 관할구역에 대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연구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참여, 검토, 분석, 점검, 환류 등
4. 관할구역의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5. 관할구역의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 및 이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실효성 있는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지역현장의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에 관할구역의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 받은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계획 또는 대책 등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의견을 관계되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제공과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관련 계획 또는 대책의 검토를-----  
-----  
-----  
-----있고, 특별  
-----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정보와 검토 의견-----

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 설>

-----  
-----  
-----  
-----  
-----  
-----

⑥ -----  
-제공, 제2항과-----  
-검토 의견의 요청과 제공,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  
-----

제16조의3(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정책협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국가적 기후위기 감시·예측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표준 체계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관리·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반영 점검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정책협의회는 제5항의 협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별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이하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에 대한 기후·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기  
반으로 기후변화 추세 및 전  
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 관할구역에 대한 제15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영  
향관계 조사·연구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사  
·연구 및 분석 결과를 기반  
으로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대  
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참여, 검토, 분  
석, 점검, 환류 등
4. 관할구역의 재생에너지의 보  
급·확대를 위한 지역별 기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  
보 제공

5. 관할구역의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 및 이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실효성 있는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지역현장의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에 관할구역의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